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2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12월 11일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의)

□ 제안이유

-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업무체계 개편에 따라 긴급복지조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, 동사무소 기능에 맞지 아니하는 동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등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중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현장확인 및 조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.(안 별표)
-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중 위임사무명,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적용 등을 법에 맞도록 조정함.(안 별표)
- 동 위임사항 중 요보호 대상자 조사 사무를 삭제함.(안 별표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5호
의결 년월일	2006.12.21 (제132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13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업무 체계 개편에 따라 긴급복지조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, 동사무소 기능에 맞지 아니하는 동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등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중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현장확인 및 조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.(안 별표)
-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중 위임사무명,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적용 등을 법에 맞도록 조정함.(안 별표)
- 동 위임사항 중 요보호 대상자 조사 사무를 삭제함.(안 별표)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제1호 농산지원과란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실과소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입 기관
주민생활 지원과	긴급복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	가.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현장 확인 및 사후조사 나. 긴급복지지원	·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8조·제13조 ·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8조	

별표중 제1호 사회복지과 2. 행여사망자 장제비 지급란, 3. 요보호자의 생계보조란, 4. 보호비용의 징수란 및 5.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6. 취로사업란 및 8. 구호에 대한 다음의 권한란을 각각 삭제한다.

2. 행여사망자 장제비 지급		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법」 제14조	
3. 수급자의 생계 보조		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법」 제7조·제8조	
4. 보장비용의 징수		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법」 제46조	

5. 수급(권)자에 관한 사항	가. 수급권자 조사 나. 수급자 보호 및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2조 내지 제25조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6조 · 제27조 · 제29조 및 제30조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별표중 제2호 사회복지과 2.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1.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

현		행			개					정		안	
실과 소별	위 임 사무명	단 위 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	실과 소별	위 임 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				
〈신 설〉					주민생활 지원과	긴급복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	가.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현장 확인 및 사후 조사 나. 긴급복지지원	·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8조 · 제13조 ·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8조	구청장				
	사회복지과	1.(생 략) 2. <u>행여사망자 장제비 지급</u> 3. <u>요보호자의 생계보조</u> 4. <u>보호비용의 징수</u>	· <u>생활보호법 제14조</u> · <u>생활보호법 제5조, 제5조의2</u> · <u>생활보호법 제39조</u>	구청장	----	1.(현행과 같음) 2. <u>행여사망자 장제비 지급</u> 3. <u>수급자의 생계 보조</u> 4. <u>보장비용의 징수</u>		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4조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 · 제8조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6조	---				

현행					개정안				
실과 소별	위 임 사무명	단 위 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	실과 소별	위 임 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
	5. 생활보호 대상자에 관한 사항	가.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나.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 및 지도·지 시	· 생활보호법 제17조, 제19조 · 생활보호법 제21조 제22조			5. 수급(권)자 에 관한 사항	가. 수급권자 조사 나. 수급자 보호 및 관리	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2조 내지 제25조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6조· 제27조·제29조 및 제30조	
	6. 취로사업		·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2조			<삭 제>			
	7. (생 략)					7. (현행과 같음)			
	8. 구호에 대 한 다음의 권한	가. 요보호대상 자 조사	· 생활보호법 제17조 및 제19조			<삭 제>			
	9. · 10.(생 략)					9. · 10.(현행과 같음)			

2. 부천시 사무의 동 위임사항

현행					개정안				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	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
사 회 복지과	1. (생 략)			동 장	----	1. (현행과 같음)			----
	2.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요보호 대상자 조사	· 「생활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9조			〈삭 제〉			
	3. (생 략)					3. (현행과 같음)			